

# 100年 前의 殺人事件 報告書, ‘檢案’

- 慶尙道 山淸郡 生林里 鴨谷洞 金召史 事件의 眞實을 찾아서 -

金 澔\*

## 차 례

### 1. 三檢官 昆陽郡守 李丙儀의 眞實

- 1) 사건 조사
- 2) 檢屍와 2차 심문(更推)

### 2. 五檢官 咸安郡守 李寅聲의 眞實

- 1) 사건 조사
- 2) 檢屍에 이은 更推와 대질심문

### 3. 산청군에서 일어났던 일

\* 서울大 奎章閣 特別研究員, 文學博士

## 1. 三檢官 昆陽郡守 李丙儀의 진실

### 1) 사건 조사

#### ① 秘 訓

때는 1903년 음력 2월 27일 酉時<sup>1)</sup>쯤이었다. 東軒에 있던 곤양군수 李丙儀에게 한 통의 비밀 훈령이 慶尙監營으로부터 전달되었다. 훈령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 경상도 산청군 생림리 압동에서 사망한 김씨 부인의 屍身을 이미 두 번이나 검시하여 처결할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죽은 김씨 부인의 아버지가 두 번의 조사가 죽음의 원인을 잘못잡었다고 누차 고소한 바 있었다. 원통한 죽음에 대해서는 기왕의 조사가 완결되었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으므로 본 군수를 별도의 조사관으로 정하여 조사 명령을 발행하니 그 단서를 확실하게 覈實하여 보고서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조사할 사람들은 이미 해당 군에 체포되어 있다. 다만 조사가 지체되면 그 사이에 또 간사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화급이 달려갈 일이다.

명령을 받은 이병의는 마음이 급해졌다. 곤양에서 산청까지 거리가 꽤 멀었으므로 빨리 출발해서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미 두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지 않아 呈訴가 계속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監營에서 자신을 조사관으로 택하였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흥분시켰다.

비밀 훈령을 받은 27일은 너무 늦어 다음날 28일에 출발하기로 했다. 다음날 이병의는 아침 東軒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70리를 이동하였다. 그제서야 겨우 단성군 境內에 들어설 수 있었다. 역시 너무 피곤하고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단성군 경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다. 29일 아침에 다시 40리를 꼬박 달려 산청군에 도착하였다. 산청군 동헌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감옥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산청군수 역시 참고인들을 정비할 시간으로 하루는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결국 29일 하루는 여독도 풀겸 잠을 청하기로 하고 다음날 30일부터 심문하기로 하였다.

---

1) 오후 5시~7시.

〈그림 1〉 서울대 규장각 소장 산청군 지도(1872년)



② 1차 심문(初推)

드디어 30일이 되었다. 이병의는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히 그러했듯이 고발자인 屍親부터 심문하기 시작했다. 처음 인명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사망한 김씨 부인의 숙부 金永云이었다. 감옥에 잡혀 와 있던 그는 자신이 金永云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고 있던 호패를 제출하였다. ‘金永云 41세’ 그림이 확실했다.

“金永云은 듣거라. 너는 發告 屍親인즉 죽은 김씨부인과 어떤 族親이며 어느 날 무슨 연유로 어떤 사람과 서로 어디에서 싸워 어느 부위를 맞아 며칠에 죽었는지 싸울 때의 광경을 내가 과연 목격하였는지 싸움의 원인과 상처가 어떤지 救療의 절차와 證人은 누구인지 흥기는 습득했는지 그리고 죽은 김씨 부인의 나이는 몇 살 인지 身上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등을 일일이 아뢰도록하라.”

“죽은 김씨 부인은 저의 조카 딸입니다. 鴨洞 權元仲에게 출가하였는데 지난 해(1902년) 11월 초2일 저녁에 權駿鎬 등 권씨 一族 세 명이 와서는 조카 딸의 병세가 급하여 死生을 알 수 없다고 전하므로 매우 놀라 제가 먼저 달려가고 저의 형님이 나중에 왔습니다. 급히 조카 사위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문 밖에서 두 아이가 헛간[灰間]에 불을 지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달아나고 權元仲의 친척 권국경, 권재환 등 두 사람이 또한 문을 밀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를 보고는 괴이하게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조카 딸은 이미 사망한 채였고 남편 權元仲은 도주한 채 다만 그 시어머니 李氏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을 당하여 가슴이 막혀 오므로 옷을 걷어 부치고 시신을 살펴 보았더니 조카 딸의 가슴부위에 상처가 있었는데 불에 데인 듯하였습니다. 그 색이 검은 자주빛이었으며 오른쪽 옆구리에 또 큰 상처가 있는데 색이 검푸르고 시신의 옆에는 다듬이 방망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조카딸이 죽은 이유를 시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오늘 저녁밥을 먹은 후 와서 보았더니 무슨 이유인지 방문이 밖으로 닫혀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채 방안에 자살하여 죽어 있었다’고云云하므로 일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저의 형님은 동네 사람들이 말리므로 제가 먼저 고발하였으며 잠깐 사이에 죽었으니 구료도 하지 못하였고 시신의 옆에 놓여 있던 방망이가 흡사 흥기인 듯하여 거두어 初檢時에 이미 現納하였으며 看證, 金召史<sup>2)</sup>의 나이, 신체의 흉터 등은 저의 형님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 것입니다. 밝게 조사하시어 원통함

2) 조이[召史]로 읽으며 양인 이하의 결혼한 여자를 일컫는다.

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망한 金召史의 親父 김영팔을 심문하기로 하였다.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초검관 산청군수 曹有承과 覆檢官 丹城郡守 鄭煥琦가 金召史의 죽음을 '自縊'으로 보고한 데 대하여 자신의 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시택 권씨 일가들에 의해 살해된 것임을 누차 呈訴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2개월여가 지난 오늘 다시 곤양군수인 이병의에게 監營에서 조사를 명한 것이었다. 호패를 거두어 보니 '金永八 47세'로 시친의 親父임이 확실하였다.

“김영팔에게 묻노라. 너의 동생 金永云의 진술을 들어보니 김영팔 네 딸이 원통하게 죽었다고 하는데 어찌 친아버지 대신에 동생이 와서 고발을 하였으며 初·覆檢 때에 네가 반드시 同參하여 必殺의 상처를 보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시에 원통함을 호소하지 않고 결정이 난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소란을 피우며 법정에서 告訴하는가.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애초 문제의 발단과 사건 당일 밤의 사망 원인과 看證이 누구인지 딸의 신체에 상처가 있었는지 나이는 몇 살 인지 등을 이실직고하라.”

“저의 딸을 1899년 己亥年에 權元仲에게 출가시켰는데 權元仲이 허송세월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도박 빚을 많이 지고 매번 빚독촉을 받는다고 하므로 丈人된 정의로서 사람을 버려둘 수가 없어 지난 봄 딸 편에 25냥을 보내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가을에 또다시 도박빚 몇백 냥을 지었는지 1902년 10월 28일 권원중의 叔父 權國敬의 子婦가 于歸하는 날<sup>3)</sup>에 저의 딸과 사위(權元仲 夫婦)도 동행했는데 이때 權國敬이 저의 딸에게 말하기를 ‘몸을 팔거나 쌀을 팔아서라도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주어야 나한테도 피해가 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 시아주머니의 부인 과부 조씨 역시 거들면서 퍽박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구타하였다 합니다.

10월 29일 저녁에 딸이 와서 이러한 그 동안의 연유를 말하므로 제가 도리로써 타이르고 다음날 새벽에 집에 고용하던 아이(이름이 골목개)를 시켜 시택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인 11월 2일 오후에 權元仲의 사촌 權周元이 저희 집에 와서는 사촌형수(從嫂)<sup>4)</sup>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제가 답하기를, ‘어제 일찍 시택으로 보냈으니 오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왜 와서 거처를 묻느냐?’고 하자 그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중에

3) 전통 혼례에서, 대례(大禮)를 마치고 3일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

4) 사망한 金召史.

權駿鎬 등이 와서는 저의 딸의 병세가 급하다고 전하였고 잠깐 후에 여러 권씨들이 몰려와서 딸의 병 이야기를 전하므로 수상한 마음이 생겨 먼저 동생과 조카를 보내고 조금 후에 따라가 보니 동네 사람들이 권씨들을 붙잡아 두는 등 광경이 창황하였습니다.

곧바로 방안에 들어가니 딸은 이미 죽어있고 死體는 싸늘하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겨 방구석에 두려는데 옷에 흠 문은 신발 자욱이 도장처럼 곳곳에 찍혀 있었고 衣籠이 깨져 있고 옷들이 흩어져 있으므로 죽은 이유를 여러 권씨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자는 '목을 땀다'고 하고 혹자는 '모르겠다'고 하여 시체를 자세히 살펴본즉 유방 사이의 가슴 부위에 구타당한 상처가 있고 청흑색으로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였습니다. 오른쪽 허리부위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검붉은 색으로 크게 부어 올라 있었으며 시체 옆에 방망이가 하나 있고 골무를 끼고 있는 오른손은 약간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에 또 권씨들에게 물기를, '내 딸이 어디에서 목을 매었느냐'고 하자 답하기를, '밖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안의 서까래에 목을 매고 죽었다'하거늘 제가 서까래를 살펴보았더니 먼지가 어지러이 흩어진 흔적이 없고 또 목을 맨 자국도 없었으므로 다시금 허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꾸짖었더니 '목을 맨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시어머니에게 들었다'하거늘 제가 權元伸과 삼촌의 거처를 물었더니 모두들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동생에게 먼저 고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初覆檢 때 제가 상처를 지목하였는데 가슴 부위가 검붉은 색이었고 옆구리가 크게 부어올라 색이 변하였으니 심상치 않았습니.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딸의 목 맨 곳을 물었더니 執綱 趙智淳은 '竹田 안이라'하고, 金尙瑞는 '厠間 서까래'라 하고, 시어머니 李召史는 '방안의 대들보'라 하였으니 한번 목을 매는데 장소는 세 곳으로 일치하지 않으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林在古는 권씨의 戚黨<sup>5)</sup>이요, 鄭煥九는 권씨의 처남이요, 金尙瑞는 권씨의 생질이요, 權駿鎬·權載琪·權載煥·權壽見 등은 모두 族黨이라 연이어 한마을에 살면서 한마음으로 대답하였으니 딸의 원한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붙잡혀간 아버지 權國敬이 죄를 받을까 봐 걱정한 權周元이 權自三과 더불어 도주한 權元伸을 체포하여 邑底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權載琪·權載煥 등이 사사로이 권원증을 풀어주었으니 이것만 보아도 저 권씨들의 豪

5) 성만 다른 일가.

勢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看證은 사비 水月이네 부부와 金尙瑞이며 저의 딸 나이는 22세이고 몸에는 조금의 상처도 없었으니 특별히 조사하여 원통함을 씻어주시기를 천만번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金召史의 아버지 김영팔은 비장했다. 그는 이병의에게 鴨洞의 권씨들 그리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임재고, 정환구, 김상서로부터는 아무런 진실을 얻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항변하는 듯했다. 이병의는 서둘러 권원중의 이웃(切隣)을 취조하기로 했다.

### ③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幼學 정환구였다. 그는 나이 오십의 중늙은이였는데 자식을 하나 얻으려다가 이번 사건 도중에 아내와 자식을 한번에 잃어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이병의는 정환구에게 이실직고하라고 호령했다.

“저는 權元仲과 비록 이웃하여 살고 있지만 별로 相從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2일 밤에 權元仲의 집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 자세히 들어보니 그의 처 金召史가 ‘結項致死’라는 소리였습니다. 마침 그때가 늦은 밤이고 출가한 여동생이 저의 집에 와 解産을 하는지라 풍속에 구애되어 바깥으로 나가 지 않았더니 이튿날 切隣의 명목으로 불들려 와 20여일을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시 석방되어 집에 귀가하니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에 이러한 변고를 당해 놀란 나머지 死産하고 앓아 누웠다가 곧이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家産이 폐망하여 도무지 정신이 없는지라 망연히 앉아 있는데 12월 그믐께쯤 사비 水月이가 저의 상황을 보러 왔다가 측은한 마음이 생겨 그러했는지 조용히 말하기를, ‘죄는 다른 사람이 지고 厄禍는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어찌 참혹하지 않은가’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지난 달 11월 2일 밤에 물을 길러 權元仲의 집 창밖으로 지나 가다가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 보니 권원중이 처 金召史의 머리채를 붙들고 발로 밟는 등 거의 死境에 이르렀고 다시 끈으로 목을 감아 灰間에 매달았다가 조금 후에 내려 방안으로 들여놓고 ‘自縊死’라 하였으니 내 비록 목격은 하였으나 발설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므로 제가 비로소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신세를 생각해보니 權元仲이 저의 업보(業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의는 정환구의 진술에 놀랐다. 그는 초·복검때는 전혀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수월이의 귀뜸과 정환구의 진술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었다. 수월이나 정환구의 결정적인 증언이 있는데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다니 도대체 초·복검때 권원중의 집에 세들어 사는 수월이를 심문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sup>6)</sup>

다음은 사건의 중요 관련자인 김상서를 심문하기로 했다. 그는 이미 초·복검 때에 시어머니 李召史의 부탁을 받고 헛간에서 주검이 된 金召史를 방안으로 옮겼다고 말한 인물이었다. 이 자를 訊問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리라.

“幼學 金尙瑞(50세)는 듣거라. 지금 洞任 林在古의 供招를 보니 ‘네가 지난 11월 2일 밤 權元仲의 처가 結項致死하였다면서 급히 洞任인 자신에게 보고하였다’하고 네가 囚徒 가운데 看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틀림없다. 어떤 이유로 金召史가 목을 매었는지 그날 밤의 광경이 어떠했는지 목을 맨 물건은 무엇인지 또 습득했는지 여부를 하나 하나 자세히 알 것이므로 숨기지 말고 아뢰도록하라.”

“이 몸이 權元仲과는 좀 떨어진 이웃으로 權元仲은 본 鴨洞에 소재하는 妻家の 田畝 7斗落을 갈아먹고 사는 바 권원중의 家勢가 본시 가난하여 빚 독촉을 감내할 수 없자 전답을 처분하여 빚을 갚고자 하는 뜻을 항상 그 처와 장인 金永八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밤에 權元仲의 어머니 李召史가 저희 집에 와서 황망하게 말하기를, ‘며느리 金召史가 灰間 서까래에 목을 매고 죽었으니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느냐며 남편 권원중은 출타하여 수습할 사람이 없으므로 당신이 함께 가서 방안으로 시체를 옮겨주었으면 한다’고 간청하므로 그만 거절할 수 없어 어리석게도 함께 가서 죽은 金召史의 목 맨 줄을 풀자 灰間에 시체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시체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방안으로 옮겼더니 곧 다시 李召史가 간청하기를 ‘즉시 內谷에 사는 시삼촌 권숙경과 洞任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렇게 한 후 돌아오자 金召史의 친속들과 권씨 죽인들이 모두 사건 현장에 모여 있었던 것이오며 치사의 원인은 실로 모르겠사오며 목을 맨 끈은 雜麻를 꼬아 놓은 것으로 습득 여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살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金召史는 헛간에서 목을 맨채 발견되었고 이를 김상서 자신이 李召史의 부탁을 받고 방안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환구에게

6)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초·복검때는 수월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들어보면 金召史를 살해하고 헛간에 목을 매단 장본인이 남편 권원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수월이를 불러다가 이실직고케 한다면 이번 사건은 천하에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병의는 수월이를 대령시켰다. '나이 22세 이름 수월' 호패는 확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월이는 정환구의 증언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저는 權載煥 가의 私婢이며 權元仲의 夾房을 빌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밤에 저의 上典 댁(권재환)에 해산 일이 있어 물을 길러 權元仲의 집 창가를 지나는데 방으로부터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아이고 나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제가 곧장 들어가서 보았더니 權元仲이 처와 함께 싸우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目下 광경은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기를 3~4차례 거듭하여 金召史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權元仲 母子가 雜麻 끈으로 金召史의 목을 매 헛칸 서까래에 매달았다가 조금 후에 낮으로 끈을 잘라 다시 방 안으로 가져간 후 바로 누이고 이불을 덮은 후 저에게 '이 일을 비밀에 붙이고 발설해서는 안된다하고 自縊인 것같다고 말하라'하거늘 제가 이 광경을 보고 전신이 전율하여 곧장 문 밖으로 나서는 데 이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늦은 저녁이라 누구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고 다시 上典 댁으로 들어가 이상의 모든 일들을 上典에게 비밀리에 고하고 小家의 안 상전이 마침 해산을 하므로 다시 나가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살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서는 자신이 李召史의 부탁을 받고 헛간에 죽어 있던 金召史를 방안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수월이는 권원중의 모자가 헛간에 金召史의 시신을 매달았다가 다시 방안으로 옮겼다고 증언하지 않는가. 그럼 김상서의 증언이 거짓이란 말인가? 수월이는 살해 광경을 보고 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문밖에서 만났다는데 과연 이 사람이 김상서는 아닐까? 김상서를 재차 심문할 때는 이 점을 확실히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어쨌든 오늘 하루에 남은 관련자들을 모두 심문하고 또 검시도 해야 하므로 서두르기로 하였다.

#### ④ 권씨들의 세상

동일 사련 幼學 권치운(44), 權國敬(73)을 심문하였다. “지금 金召史의 獄事に 산청군 囚徒 기록을 보건대 권치운 너는 간증으로 적혀있고, 權國敬 너는 詐連으로 적혀 있었다. 獄情의 중요함이 詞證만한 것이 없으므로 치사의

원인을 변명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모두 아뢰도록하라.”

권치운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內谷村에 사는데 압동과는 거리가 산을 넘어 3리쯤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밤에 ‘權元仲의 처가 結項致死하였다.’면서 압동에 사는 金尙瑞가 달려 와 權國敬의 집에 알리므로 우리 일가들이 너무 놀라 곧바로 압동 권원중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소문대로 광경이 참혹하였습니다. 死由를 李召史에게 물었더니 ‘妻家の 담 7두락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싸우더니 불효한 며느리가 이렇게 목을 매고 죽어 한 동네를 시끄럽게 하니 어찌 이같은 厄을 당하였는가’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보고 들었을 뿐이요 이밖에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국경은 나이 73세의 노인으로서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간단히 답하였다. “金尙瑞의 전갈을 듣고 과연 와서 보았더니 권치운이 말한 바와 같을 뿐입니다. 살펴 처리하십시오.”

압동은 권씨들의 세계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남은 관련자들도 모두 권씨들 투성이였다. 모두 일족으로 자신들끼리 무슨 말을 맞추었는지는 한결같이 잘 모른다는 말 뿐이었다. 다음은 권주원 차례였다. 그는 권국경의 아들로 이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11월 2일)만해도 낮에 죽은 金召史의 친정에 가서 金召史의 거처를 묻고 돌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金召史의 시어머니 李召史로부터 부탁을 받아 다녀왔다는 것이다.

“저는 權元仲의 4촌입니다. 작년 10월 28일은 저의 집에 于歸日이었습니다. 權元仲 부부도 함께 집에 왔다가 다음날 29일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에 ‘從嫂가 집에 없다’면서 숙모 李召史가 제게 친정집에 가서 金召史의 거처를 물어보라고 부탁하시므로 가서 보았더니 친정 아버지 金英팔이 ‘딸은 이미 며칠 전에 시택으로 갔다’고 답하였고 이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結項致死라 하고 이런 변고가 발생한 후 權元仲은 도피하고 저의 아버지 權國敬이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고로 죽인 권자삼을 보내어 安義 등지에서 권원중을 잡아 本郡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權載琪가 ‘獄事가 이미 끝나가고 있으니 체포가 불필요하다’면서 사사로이 놓아주었던 것뿐입니다. 이 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살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 安義 등지에서 권원중을 체포한 권자삼을 심문하였다.

“權自三(39세)은 듣거라. 지금 金召史 옥사에 權周元의 供招를 보니 ‘너를 보내어 權元仲을 체포하여 읍내에 도착하였다가 放還하였다’고 하고 또 관찰

부의 훈령 안에 '권자삼을 붙들어 두었다'고 하였다. 내가 체포한 權元仲은 죽은 金召史의 남편이다. 이번 옥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도 내가 스스로 놓아주었으니 누가 시킨 것이냐. 사실이 확인된다면 너의 죄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 감히 변명할 생각 말고 이실직고하라.”

“權周元은 權國敬의 아들입니다. 지금 옥사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가 獄中에 붙들려 있으므로 권주원이 제게 '權元仲을 잡아오라'고 부탁하였고 安義 등지를 탐문하다가 권원중을 체포하였는데 權載琪가 放送을 주관하길래 저는 다시는 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잡은 증인을 사사로이 놓아주고 더 이상 이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권재기, 권재환 이들 또한 사건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權載煥(53세)은 이 사실을 곧바로 부인하였다. “權元仲을 풀어주었다는 말을 金永八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년 10월 29일 김영팔을 본 이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金永八의 말이 실로 저를 무함하는 것이요. 金召史의 自縊致死 역시 처음에 權元仲의 어머니 李召史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미 초·복검시에 自縊의 증거가 확실하였습니다. 비록 저의 집이 권원중과 가까우나 번고가 늦은 밤에 일어나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살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다음 심문때 권자삼과 대질심문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병의는 생각했다. 무언가 권재환, 권재기 등 권씨일가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권씨들이 말을 맞추었다면 이를 어떻게 간파할 것인가. 문제는 권씨들이 자신들만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도 사건에 관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정환구였는데 그에게 비밀리에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권수견을 대령하도록 했다.

權壽見이 무어라고 답할지 자못 궁금했다.

“작년 10월 28일은 權元仲의 삼촌숙부인 權國敬의 집 于歸日이라 權元仲의 부부가 함께 來參하였던 것은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11월 2일 밤에 權元仲의 집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처 金召史가 방 안에 죽어 있으므로 괴이하여 물어보니 시어머니 李召史가 말하기를, '방안의 들보에 목을 매 죽었다'고 하고 이때 동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 金永八도 역시 도착하여 야단법석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복검시에 간증으로 기록되고, 체포인 명단에도 들어 있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

사오나 屍親 金永八의 ‘권씨들이 한가지 마음으로 대답하여 원통함을 씻지 못하였다’는 소리는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金召史가 목을 맨 장소는 竹田邊 헛간 인데도 졸지에 변고가 발생하자 시어머니 李召史가 망령되게 방 안의 대들보에 목을 댔다고 하므로 이 이후는 절대로 방 안이라 말하지 말고 한결같이 竹田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權載琪가 몰래 戒嚴하였던 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鄭煥九는 切隣이므로 몰래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嚴問이 이에 이르니 몸들 바를 모르겠나이다. 살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권씨들의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듯했다. 권수건을 엄하게 問招하니 처벌이 두려워 결국 권재기의 사주임을 吐說하지 않는가. 이제 남은 권재기와 李召史의 증언만 받아낸다면 이번 사건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권재기는 이전에 鄉長을 역임한 權門 일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권재기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꾸몄을까? ‘幼學 權載琪 42세’ 호패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응답을 들었다.

“도주한 權元仲을 체포하여 올 때는 사건조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사망 이유도 ‘自縊’으로 정리되어 죄가 權元仲에게 없음이 확실한데다가 또 이미 避身한 몸이므로 후일을 생각지 않고 사사로이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밖에 별달리 무언가 숨길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한편 집안의 변고에 대해서는 金召史의 사망이 竹田 헛간에서 自縊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방문 밖에 자물쇠가 잠겨 있고 방 안에 死體가 놓여 있다는 말 등이 도무지 語不成說이므로 더욱 獄情을 혼란스럽게 할까 봐 모두 ‘竹田의 灰間에서 縊死함’으로 納供하라고 훈계하고 이를 글로 써서 權壽見 등에 보내었던 것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되니 살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권재기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듯했다. 시친 김영팔을 포함하여 이병의가 가장 의심을 가졌던 것이 진정 金召史가 사망한 장소였다. 李召史는 방 안에서 죽었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헛간에서 죽었다고 하고 또 측간에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방안에서 살해하여 헛간으로 옮겼다가 다시 방안으로 가져갔다는 수월이의 증언도 있지 않은가. 권재기는 이를 ‘헛간에서 자살’한 것으로 정리한 셈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金召史는 부부 싸움 후에 헛간에서 자살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당시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어머니 李召史였다. 그녀는 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이병의는 이미 산청군수와 단성군

수의 초검 및 복검 내용을 탐문해 두었는데 李召史가 매번 진술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초검의 初推<sup>7)</sup> 때 李召史는 자신의 며느리 金召史가 방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물쇠를 밖으로 잠근 채 말이다. 그러다가 初檢 三招 때는 이 말을 반복하여 '金召史가 헛간에서 자살한 것을 밖으로 끈을 풀어내고 김상서의 도움을 받아 방 안으로 옮겨놓았다'고 말한 것이다.<sup>8)</sup> 그렇다면 金召史가 자물쇠를 밖으로 걸고 방 안에서 자살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인가. 어쨌든 李召史의 증언대로 초·복검의 결론은 金召史가 헛간에서 '自縊致死'로 내려졌다는 첩보였다. 李召史의 반복이 권재기의 함구령 및 헛간의 自縊으로 일제히 답변하도록 훈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병의는 먼저 李召史의 말을 듣기로 했다. 李召史를 대령한 후 호패를 확인해보니 60세의 노인이었다. 현재 金召史의 남편 권원중이 도주한 상태에서 李召史의 심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야 했다.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李召史는 막무가내였다. 김영팔과 수월이가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몸은 수년 전 남편을 잃고 과부로 큰아들 부부와 內谷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權元仲은 압수동에 출가하여 살고 있는 바 작년 10월 28일은 한 동네에 거주하는 시숙 권숙경의 子婦 于歸日을 맞아 이날 子婦 金召史가 姪婦 등과 함께 시숙 권숙경의 집에 놀러 갔었고 29일에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에 들으니 저의 아들 權元仲이 채무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주하였다하므로 이내 權元仲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며느리도 어디론가 없어서 혹 친정으로 갔나하고 조카 權周元을 시켜 친정 金永八의 집에 가서 찾아보라 하였던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온돌에 불을 지피러 灰間에 땀감을 가지러 갔더니 며느리 金召史가 灰間 서까래에 목을 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단 냇으로 줄을 끊고 급히 문 밖으로 나가니 때마침 金尙瑞가 집 밖으로 나오므로 함께 집에 가서 子婦를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손으로 전신을 문질러보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어 다행히 회생을 기대하고 침을 입안에 넣어보았으나 영영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權國敬으로 하여금 金永八의 집에 소식을 알리게 하고 金尙瑞에게 권씨 죽친들에게 알려

7) 검안은 初·覆 兩檢이 원칙이며 한번 조사 때 세 번의 심문(初推[招], 更推[招], 三推[招])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초검 초추'는 1차 조사의 첫 번째 심문이다.

8) 초·복검 보고서의 李召史 증언 참조. (『山淸郡生林里鴨谷洞致死女人金召史檢屍初檢文案』〈奎 26569-1〉; 『山淸郡生林里鴨谷洞致死女人金召史檢屍覆檢文案』〈奎 26569-2〉)

달라고 하였더니 김씨들이 몰려와 저를 결박하고 공갈하며 죽은 이유를 묻는데 ‘灰間結項’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방 안의 들보에 목을 매었다고 하니 속여서 답한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평소 금슬이 화목하였으며 이날은 아들 또한 出他 중이었으므로 둘이 어찌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衣籠이 부서지고 金召史의 가슴 부위가 구타당했다는 것은 도무지 金永八의 臆說이며 사비 水月이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듣고 무함하는지 그날 밤 水月이를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밖에 서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金召史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면 초·복검시에 왜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실로 ‘自縊而死’이니 밝게 조사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李召史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다. 김영팔과 수월이가 자신을 무함한다는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고 피곤하여 일단 심문을 그치기로 하였다. 내일 검시와 나머지 訊問을 위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친 것이다.

## 2) 檢屍와 2차 심문(更推)

### ① 檢屍

3월 1일 아침이 되었다. 아침을 먹은 후 이병의는 應參各人<sup>9)</sup>을 이끌고 읍내에서 북으로 30리쯤 떨어진 산청군 생림리 압동에 도착하였다. 죽은 金召史의 시신은 압동에 가매장되어 있었는데 서쪽으로 山麓에 접하고 있었다. 좌우 전후를 尺量하니 전후로 8척이요 좌우는 4척 3촌이었다. 이어 오작사령 良人 윤득신으로 하여금 무덤을 차례로 파헤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龍旨가 1개, 다음 藁索束 이 3개, 다음은 松楸 덮개가 하나 있었다. 이를 들추니 서쪽으로 머리를 동쪽으로 발을 향하고 누어 있었다. 사체를 밝은 곳에 옮겨 棺을 제거한 후 목판에 옮겨두고 차례로 옷을 벗겨냈다. 검시를 하기 전에 屍親 김영팔에게 시신이 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서 오작인 윤득신으로 하여금 屍身을 法物로 세척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檢驗하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시신을 살펴본 결과 가슴 부위의 상처, 목의 액흔 등을 살펴보고 이병의는 ‘구타후 자살을 위장한 살인사건’임을 도출했다. 권씨들은 자살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살인사건이었다. 수직군 둘을 붙여 金召史의 사체를 지키도록 하였다.

---

9) 사건 관련자 일체.

## ② 金召史 사건의 진실

檢屍가 끝나자 이병의는 곧바로 2차 심문(更推)과 관련자들을 대질 심문하기로 했다. 먼저 李召史의 부탁으로 金召史의 사체를 옮겼다고 증언한 金尙瑞를 신문하여 진실을 확인하면 그만이었다.

“金尙瑞에게 재차 묻노라. 사건 당일 밤 죽은 金召史를 灰間으로부터 방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나? 水月이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만난 이가 네가 아니라면 또 누구인지 말하라. 이번 獄事에 네가 매우 중요한데다 水月이의 증언이 이러하고 또 검험한 것을 보더라도 가슴 부위에 발로 চে이고 주먹으로 맞은 상처가 분명하니 감히 속일 생각 말고 하나하나 모두 아뢰도록하라.”

金尙瑞는 너무도 쉽게 水月이의 증언이 진실이고 자신의 증언은 거짓이었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李召史의 사주였음을 증언하였다. “그날 밤 과연 權元仲의 어머니 李召史로부터 간청을 듣고 그 집에 갔더니 지신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灰間에서 사체를 옮겼다는 말은 시어머니 李召史의 설득으로 인해 거짓 증언한 것이니 金召史 살해 사건은 水月の 입증이 한결같이 옳고 전일의 거짓 증언은 우매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니 지금 생각해보면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한편 사건 당일 水月이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밖에 서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살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水월이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金召史를 구타하고 회간에 목을 매달았다가 다시 이를 방안으로 옮긴 것은 권원중 母子의 짓이 틀림없다는 것인가. 水월이의 증언을 다시 들으면서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다.

“저(水월)의 所懷는 이미 전초에 모두 말씀드렸으며 저의 남편 申돌이는 호구지책을 위하여 함양 등지에 나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前檢 때는 겁이 나서 숨어있다가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鄭煥九에게 말한 것은 옥사가 대략 끝나가고 액을 당한 후 홀아비가 된 상황이 불쌍하여 실로 矜恤한 마음에서 禧중의 말이 갑자기 나온 것이니 이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水월이가 순순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도 모두 권원중이 범인임을 자백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권씨들이 수궁하는 일이었다. 이미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 권씨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든 이병의는 제일 중요한 향장 권재기를 심문하기로 했다. 권재기 역시 순순히 진실을 인정하였다.

“이몸의 所懷는 전초와 같으며 權元仲을 사사로이 放送한 것과 竹田의 설<sup>10)</sup>을 비밀리에 부탁한 것은 과연 어리석고 族誼-일가 사이의 정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날 밤의 광경을 水月이가 입증하였고 검시의 상흔을 法文이 밝혀냈으니 비록 친족을 보호하려하나 사실이 여차한데 다시 무엇에 연연하겠나이까. 밝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의는 긴 어둠 속을 헤치고 나와 진실의 빛을 보는 듯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李召史의 증언을 통해 사건을 종결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李召史는 완강하였다. 수월이와 김상서가 위증을 한다는 것이었다. 대질 심문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李召史와 사비 수월이를 대령하도록 했다.

“먼저 李召史 듣거라. 너는 再招에서 ‘金召史가 죽을 때 아들 권원중과 함께 목을 매달아 살해한 후 회간에 잠시 매달았다가 다시 방안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水月이 너는 전후 供招에서 ‘사건 당일 밤 金召史가 구타당해 거의 절명하였는데 권원중이 목을 매 죽이고 다시 방 안으로 들여왔음을 정녕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지금 너희 두 사람의 말이 어찌 이리도 모순되는가. 獄情과 人命이 엄중하니 이실직고하라.” 이병의가 둘에게 물었다.

그러자 먼저 水月이가 李召史를 향하여 말하였다. “댁의 아들과 자부가 그날 밤 서로 싸울 때 손과 발로 구타하고 거의 절명하였는데 다시 끈으로 목을 매어 회간에 매달았다가 조금 후에 방안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은 후 이 모든 일을 발설치 말라고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공장 李召史가 水月이를 향해 말했다. “이년아 네가 죽어도 그런 말을 지껄어하겠느냐? 네가 어찌 이같이 말할 수 있느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살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서 李召史는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사건 관련자 가운데 李召史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수월이의 증언을 인정하는데 李召史만이 여전히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저렇듯 거짓 증언을 계속하던 말인가. 이제 이병의는 곤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사건조사도 끝나고 또 ‘구타후 自縊’으로 위장한 살인사건임을 확인한 마당에 더 이상 산청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조사 결과도 흡족하였다. 初檢·覆檢 때 적당히 조사하여 살인사건임을 밝히지 못한 산청, 단성군수와는 전혀 상반된 조사 보고를 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0) 竹田의 헛간에서 자살하였다는 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3월 5일 아직 곤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병의는 이날 감옥에 갇혀있던 시어머니 李召史가 피를 토한다는 보고를 접하였다. 사실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주리를 틀고 또 곤장을 몇 대 치기는 하였지만 피를 쏟을지는 몰랐다. 몇일 더 산청에 머물면서 추이를 살피던 이병의는 3월 7일 일주일간의 산청 체류를 접고 곤양으로 떠났다. 곤양군에 도착한 이병의는 한편으로는 산청군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여 三檢보고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청군 사건의 4차조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初·覆檢 때와 다른 사건 조사 결과는 풍문을 타고 곤양군수의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감영에 알려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영에서는 4차 조사관을 擇定하여 또 한번 金召史 살인사건의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수월이와 李召史 등의 진술을 받는다면 진실은 여지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 ③ 삼검관 곤양군수의 결론

곤양군으로 돌아온 이병의는 곧바로 金召史 사건의 跋辭<sup>11)</sup>를 쓰기 시작했다.<sup>12)</sup> 검시때 金召史의 가슴 등을 보니 구타의 흔적이 있는데다가 또 사비 水月이가 구타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체의 두 손은 약간 쥐고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 않았으며 혀 또한 나오지 않았고 의복에 흠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死因은 확실히 구타 후 자살 위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래턱〔頰類〕과 귀 부위의 액흔이었다.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약간 붉기도 하고 검기도 하니 이는 곧 목을 땔때 숨이 남아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로 보건대 金召史의 죽음은 '구타 후 被縊致死'로 기록하는 것이 맞으며 『增修無冤錄諺解』의 〈勒死條〉를 보면 죽기 전에 목을 조르고 自縊인 듯 위장하면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번의 옥사를 일컫는 말 같았다. 무엇보다도 본 산청군 생림리 압수동은 권씨들의 世居地로 간증, 절린, 사련, 간련이 모두 權族이 아니라면 權戚-성이 다른 일가-이라 아무리 철저히 질문하여도 한결같이 一心으로 답변하는 것이 참으로 조사를 어렵게 만든 제일의 이유였다. 그리고 밤에 사건이 발생하여 목격자가 오직 사비 水月이 하나 뿐이라는 점 이 두 번째 이유였다.

11) 사건 조사자의 평가 및 결론.

12) 실제 三檢案은 1903년 4월 5일 '삼검관 곤양군수 李丙儀'의 이름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12월 그믐 水月이가 鄭煥九의 喪妻 정황을 보고 權元仲의 殺妻 사실을 말하였으니 하늘이 水月이의 입을 빌어 金召史의 원수를 갚은 것이리라. 조사가 마음먹은 만큼 쉽지는 않았지만 이병의는 진실을 파헤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산청군의 풍경을 떠올리고 있었다.

산청에서 돌아온지 그럭저럭 몇일이 흘러 3월 12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날 산청군으로부터 이병의에게 소식이 날아들었다. 감옥에 대기 중이던 시어머니 李召史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4차 조사관이 산청군에 도달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던 李召史의 僞證이 세상에 탄로날 것인데 어찌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단 말인가.

더욱 이병의를 불안케 한 사실은 李召史가 삼검관인 자신의 仗毒으로 吐血하던 중 원통하여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었다. 심지어 삼검관이 심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고문과 亂杖을 동원하여 酷刑을 가했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李召史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산청군수는 法例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곤양군수의 삼검이 끝난 뒤 아주 중요한 관련자가 아니라면 대개 석방하였는데 당시 金召史의 시어머니 李召史는 干連이므로 투옥 중이었다. 그런데 음력 3월 12일 새벽<sup>13)</sup>에 권주원이 發告하기를, ‘저의 叔母 李氏가 지난번 조사관 곤양군수의 심문 때에 更推 도중 亂杖을 맞아 吐血·瀉血하다가 원통함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젯밤 옥중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으니 법에 따라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다는 것이다.

## 2. 五檢官 咸安郡守 李寅聲의 진실

### 1) 사건 조사

#### ① 두 통의 秘訓

1903년 3월 21일 그리고 24일 몇 일 간격으로 두 통의 秘訓이 함안군수 이인성에게 전달되었다. 먼저 온 한 통은 金召史의 시어머니 李召史의 자살 사건에 대하여 산청군수의 초검에 이은 覆檢을 시행하라는 교시였고 나중에 온 훈령은 金召史의 죽음에 대한 다섯 번째 檢驗을 命한다는 것이었다.

---

13) 寅時(오전 3시~5시).

시어머니 李召史의 뜻밖의 죽음으로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인성은 李召史의 覆檢 명령이 떨어질 더 빨리 왔지만 金召史의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나 사체의 훼손이 더 심할 것이라 생각하여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로 발생하지는 않았고 金召史 죽음에 대한 조사는 이미 네 차례나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五檢을 명한 것으로 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았다.

이인성은 곧바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기왕의 조사 결과를 탐문하기로 한 것이다. 1, 2차 조사때 자살로 처리된 것을 곤양군수가 3차 조사에서 亂杖과 위협으로 자백을 받아 '구타후 살해'로 보고하였고 결국 한번 더 조사를 벌인 4차 조사관 의녕군수 김영기는 金召史의 자살과 삼검시 곤양군수의 고문과 吏卒들의 협박이 문제였음을 痛駭하였다고 알려졌다.

특히 4차 조사에서 김상서, 수월이 등의 진술이 이전과 전연 달라진 점이 특징이었다. 사비 수월이는 삼검관 곤양군수에게 답했던 것과 달리 사건 당일 상전택의 産室에 있어 나가보지도 못하였으며 단지 11월 2일 밤에 문 밖에서 시어머니 李召史의 '나의 자부가 灰間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경황이 없어 곧바로 상전에 아뢰는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更推때도 '상전택의 출산 일로 물을 길러가다가 갑자기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金召史가 무슨 마음인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며 소리쳤으며 자신은 산후 救療차 물을 길어 귀가하였을 뿐이고 조금 후에 문밖에서 金召史의 自縊이라는 시어머니 李召史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는 소문이었다.

심지어 三檢時 金召史의 사체를 헛간에서 방안으로 옮겼다는 말을 李召史의 사주에 의한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김상서의 경우에도 사검관 앞에서 자신이 金召史의 시체를 방안으로 옮겼음을 재차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五檢官 이인성은 훈령을 받은 3월 24일 당일 출발하여 진주의 義谷寺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인 3월 25일 산청군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屍親 김영운 그리고 김영팔을 대령하였다. 이들은 여전히 삼검 때 곤양군수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 진실임을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강조하였다. 압동은 권씨들의 세상이라면서, 그런데 절린들을 심문하자 뜻밖의 이야기들이 제기되었다. 친부 김영팔이 이번 사고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② 金召史의 親父 金英팔이 범인이다.

權載煥이 먼저 나서 답하였다. “저는 權元仲의 14촌 遠族으로 작년 11월 2일 밤 저의 처가 産氣가 있어 해산차 淸正 鄭煥九의 집으로 가서 조금 있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이웃 權元仲의 집에서 哭聲이 들렸으나 출산 관계로 가 보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사비 水月이의 말이 들리기를 ‘權元仲은 출타하고 부인 金召史가 自縊하여 시어머니 李召史가 통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 權元仲은 보지 못한 지가 오래인데 어떻게 제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金永八의 음모입니다.

심지어 저 흉악한 金永八은, ‘사위가 자신의 전답을 팔아치우려고 안의에 갔다’면서 남편에게 빚독촉을 받아 淸正에 온 딸을 구타하여 내쫓기조차했으니 金召史가 편협한 성격에 하소연할데가 없어 차라리 죽겠다고 하며 마침내 自盡한 것이니 딸을 驅逐한 金永八이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외지에 출타한 權元仲이 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환의 주장은 새로웠다. 金召史의 아버지 金英팔이 딸을 구박하여 쫓아내자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던 金召史가 자진했다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범인은 차라리 金英팔이라는 주장이었다. 金英팔이 정말 자신의 딸을 구박했는지도 물어볼 일이었지만 金英팔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곤양군수는 어찌하여 이처럼 사실이 명백한데도 酷刑을 가해 거짓 증언들을 받아냈단 말인가.

③ 삼검관 곤양군수의 酷刑 그리고 허위 자백

이인성의 생각은 金尙瑞 그리고 수월이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제(김상서)가 지난해 10월 그믐밤에 납부해야 할 結錢을 빌리려고 권원중의 창 가를 지나는데 金召史 姑婦가 도박 빚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듣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밤에 또 창문 밖으로부터 어떤 여인이 ‘사람살려(活人), 사람살려(活人)’하면서 우는지라 놀라나가보니 金召史의 시어머니 李召史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자부가 竹田변 헛간에서 결항하여 목숨이 경각’이라면서 ‘함께 가서 구해달라’하므로 따라가 보니 결항 끈은 이미 中斷하고 金召史는 죽어 있었습니다. 액흔은 좌측 귀 뒤로 나 있고 끈의 재질은 麻 네 줄기를 꼬은 것이었습니다. 반은 椽木에 걸려있고 반은 아래턱[頷頰] 아래에 걸려 있었으며 지면에 돌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크기는 두부 만드는

둘 정도였으며 이후 아래와 좌우 耳根의 피부 색이 검푸른 색이고 兩眼은 半開하고 혀는 조금 나와있었습니다. 서까래 위의 먼지가 어지러웠는지는 날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고 옷 안의 분노 여부 역시 보지 못하였고 서까래로부터 지면까지의 높이는 한 사람 키 정도이었고 머리로부터 목을 맨 곳의 끈 길이가 대략 바늘자(針尺)로 7촌쯤 되어 보였습니다. 살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수월이 역시 곤양군수의 酷刑과 사령들의 권유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제가 지난해 11월 2일밤에 문을 닫으려고 마당에 내려서니 金召史의 시어머니 李召史가 길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자부가 목을 매 죽었다. 누구든지 친정에 좀 알려주소’라고 하므로 이같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三檢 때 너무 엄하게 주리를 틀어 저의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으며 곤양의 사령배들이 ‘權元仲 부부가 비록 서로 발로 차고 가슴을 치는 다툼이 없었다해도 가슴을 때리고 서로 싸웠으며 발로 차 살해하여 방 안에 넣고 베개를 받쳐 누여놓았다고 답변하면 한쪽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겠다’며 위협하는지라 유치한 소견으로 살아나갈 방도만 생각하고 사령배의 말을 따라 이같이 納拱한 것입니다. 원래 이년이 사건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아니오며 머리채를 잡고 옷을 덮었다는 말 그리고 자물쇠로 잠그고 신발을 숨겼다는 말은 처음부터 시킨 사람도 없었고 또 이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니다. 살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김영팔의 구박과 吳召史의 등장

이인성이 생각하기에 삼검관 곤양군수의 嚴杖은 확실히 문제였다. 아무리 訊問 과정에서 고문이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로 주리를 틀고 피를 토하고 자살할 정도로 亂杖을 쳤다니 어진 사또는 아닌 것이 기정사실인 듯했다. 이인성은 이제 金召史의 친정 아버지 김영팔이 정말 빚 문제를 의논하러 온 자신의 딸을 구박하고 이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었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로 했다. 從嫂 金召史를 찾아달라는 시어머니 李召史의 부탁으로 김영팔의 집에 다녀왔던 權周元의 증언은 경청할만 했다.

“지난 11월 2일 夕陽에 숙모 李召史가 저의 집에 와서 子婦 金召史의 거처를 묻길래 제가 엿그제 이미 귀가하였다고 한즉 숙모가 제게 말하기를, ‘친정에 간듯하니 네가 가서 유무를 探知하라 하옵기에 즉시 金永八의 집에 가서 從

嫂의 거처를 親父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김영팔이 답하기를 ‘딸이 엇그제 저녁 무렵에 남편의 빚을 의논하러 왔다면서 자신이 저축해 둔 60냥을 달라고 하므로, 네 남편은 나의 전답을 팔아먹으려고 나갔고 너는 또 내가 저축한 私蓄錢을 재촉하니 다시는 내 집에 발걸음을 말라고 꾸짖었다’ 합니다. 그러자 金召史가 ‘남편은 빚 독촉을 하고 부친은 또 이리 구박하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버지 김영팔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므로 더욱 화가 난 김영팔이 크게 꾸짖으며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저 흉악한 金永八이 딸을 구축하여 이런 변고를 만들었으니 저 놈은 우리집의 원수입니다.”

다음날 26일, 이인성은 곧바로 권수견을 訊問했다. 그리고 權壽見(45)으로부터도 김영팔의 구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三檢官 곤양군수의 조사 때인 3월 말에 김영팔이 동네의 吳召史를 매수하여 金召史가 ‘被打死’였음을 確定하려 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몸(권수견)이 당시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金永八이 담뱃대로 땅바닥을 치면서 ‘지난 그믐날 밤에 딸이 와서 남편 권원중이 친정의 답전을 茂朱 宮齋에 팔려고 한다며 남편이 사사로이 재산을 달라고 꾀박한다고 하므로 딸에게 너를 낳아 길러서 그리고 시집을 보냈으면 그만이지 또 무슨 재산을 달라느냐하고 새벽에 타일러 보냈는데 또 와서 재차 말하므로 크게 꾸짖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吳召史에게 듣자하니 ‘金永八이 그녀를 청해 부르더니 이후 수상한 자가 金召史의 死由을 물으면 被打의 상처가 대단하였다고 말하라 그러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였다’합니다.”

吳召史라. 吳召史는 처음 들어본 인물이었다. 아직 누구도 김영팔이 돈으로 吳召史를 매수하여 金召史가 ‘被打死’였음을 주장하는데 이용하려 했다고 증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吳召史를 심문하자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제가 사는 동네가 金永八의 동네와 3리쯤 떨어졌는데 지난 2월 29일 아침에 金永八이 그 雇傭兒를 보내 저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鴨谷 내 딸의 죽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기에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金永八이 다시 말하기를, ‘근일 조사관(三檢官)이 왔는데 혹 내 딸의 死由를 물으면 상처가 많았다’고 답해달라 하옵기에 제가 ‘모르는 일로 공연히 말하였다가 후일 탄로가 나면 後事를 감당기 어려울 것이다’고 하니 金永八이 또 말하기를 ‘이 일만 잘하면 후에 수고비를 많이 줄테니 내 말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김영팔은 삼검관 곤양군수의 조사 때 딸 金召史의 죽음을 ‘타살’로 몰고가기

위해 吳召史 등을 매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팔이 곤양군수에게 조사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사령배들이 사비 수월이에게 보지도 못한 당일의 사건 정황을 모두 설명해주었을 뿐 아니라 남편 권원중이 처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남은 왼쪽 다리마저도 주리를 틀어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월이가 그러지 않던가? 당시 너무도 엄한 고문에 수월이 자신이 金召史를 죽였다고 말하라면 그렇게도 할 정도였다고.

金召史 사건의 진실은 점점 밝혀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오래된 사체가 이기는 하지만 獄事의 嚴正을 위해 金召史의 시신을 검험할 일 그리고 김영팔과 吳召史를 대질 심문할 일이었다. 날이 너무 어두워져 이날 하루를 쉬기로 했다.

## 2) 檢屍에 이은 更推와 대질심문

### ① 진실을 말하라.

오검관 이인성은 27일 해가 뜨자마자<sup>14)</sup> 검시에 동행할 사람들을 데리고 金召史의 시신이 묻혀 있는 산청군 생림리 압곡으로 행차하였다. 지루한 金召史 사건을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에 일찍 서두르게 된 것이다. 山麓에 도착하니 무덤가에 쇠못을 박아 표시를 해두었다. 이미 金召史는 매장되어 있었지만 이를 파헤치고 관을 꺼내어 검시를 하였다. 사체가 오래되어 상처를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가슴부위의 구타 흔적을 살펴보았지만 김영팔의 증언과 달리 약간 누르스름한 자줏빛으로 만져보니 딱딱하지도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實因을 '自縊致死'로 확정하였다. 수직군을 시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덤 주위를 지키도록 하고 다음날 다시 심문을 하기로 했다.

3월 28일 屍親 金永云, 金永八의 更推를 시작하였다. 이때 김영팔은 자신의 원통함을 논하면서 권씨들의 무함과 도리어 吳召史를 권씨들이 매수했다고 반박하였다. 이인성은 사령배에게 명하여 金永八, 吳召史의 대질 심문을 준비토록 했다. 하루가 지난 29일 屍親 金永八, 사련 吳召史를 獄庭에 불러 들었다. 이인성은 논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서로 싸우며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아귀다툼이 더 벌어질 듯하여 이인성은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사실

14) 卯時(오전 5시~7시)였다.

吳召史의 증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삼검관 곤양군수의 酷刑과 이로 인해 수월이가 허위로 자백했음이 분명한데 더 이상 쓸데없는 말들이 필요하겠는가? 이인성은 사건 조사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남편의 빚 문제로 시댁에서 독촉을 받고 또 親父에게 돈을 구하러 갔는데 친정아버지 역시 구박하자 세상을 버리기로 결심한 金召史가 自縊한 사건으로 말이다. 그런데도 김영팔은 자신의 구박이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 被殺을 주장하고 마침내 삼검관의 조사 때는 구타 후 피살된 것으로 사건 조사를 이끌기 조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증언한 수월이 역시 嚴杖에 허위 자백했음이 이후 조사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더 이상 사건을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 ② 五檢官의 결론

結項致死한 金召史의 사체를 범례에 따라 검험하여 屍帳 3건을 제작하여 한 건은 시친에게 한 건은 관아에 한 건은 관찰부에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恒産이 없는 자의 돈 문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체는 5개월이 지나 많이 변질되어 상처를 포착하기 어렵고 검시를 다섯차례나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간사한 계교가 자꾸 생겨난데다가 또 詞證은 주로 친족들을 심문함으로써 의심만 더해갔을 뿐입니다. 實因 또한 '구타'라 하기도 하고 혹 '結項'이라고도 하니 점점 애매해지기만 했습니다. 만일 이번 저의 조사에서도 명쾌하게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죽은 金召史의 원수를 갚을 길이 없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死因을 꾸며낸다면 살아있는 남편(권원중)이 또 고충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었습니다.

'被打'라는 말은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이 명백하므로 거짓임을 分辨할 수 있으며, 自縊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니 情迹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被打로 보면 삼검장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한 수월이로 인해 金召史의 집안이 유리하게 되었지만, 自縊은 여러사람들의 증언이 서로서로 비추어 조사자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수월이가 확실하다면 여러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이치로 따져 보아도 과연 그렇지 않으며 여러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저 수월이가 다리가 부러지는 酷刑을 당한 데다가 使令들의 말을 들으면 목숨만은 부지시켜주겠노라고 유혹하였고 이미 事勢가 그러할진대 金召史를 죽



이지 않았는데도 金召史를 죽였다고 물으면 반드시 자신이 죽였다고 할 터이고 광경을 목격하지도 않은 자신에게 奸證을 직고하라하면 간사스러운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김상서가 방안으로 사체를 옮긴 것은 李召史의 泣請이었다 하고 사체를 방안에 내려 놓았을 때 혀가 조금 나와 있고 눈이 반쯤 잠겨 있었으며 목을 맨 줄을 보니 서까래에 매달려 있었고 인후부로부터 귀 뒤로 검푸른 색의 상흔이 있었고 변사체인지는 옷을 입고 있어 알지 못하였으며 지면에 돌 하나가 있었는데 발자국 등이 있었는지는 날이 어두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건대 被打死가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자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저 金召史의 아버지 김영팔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딸이 친정에 왔는데도 좋은 말로 타이르지 않은데다가 남편에게 빗독축을 받은 딸을 도리어 구박하고 내쳤다가 이런 慘變을 당하자 원통한 마음을 씻으려고 '被打'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구타가 있었다라면 검시와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사건은 원통한 마음에 스스로 자진을 택한 金召史의 自縊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 3. 산청군에서 일어났던 일

100년 전 산청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필자는 1902년 10월 28일부터 이듬해 1903년 5월 1일에 이르는 무려 6개월여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던 '山淸郡 生林里 鴨谷洞 致死女人 金召史'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시도하였다.<sup>15)</sup>

때는 1902년 11월 3일, 산청군의 金永云은 조카딸 金召史가 살해되었노라고 산청군에 고발해온다. 산청군수는 곧바로 그날 조사에 착수하여 訊問을 시

15) 사건 조사에 활용된 고문서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山淸郡 生林里 鴨谷洞 致死女人 金召史 檢屍 初檢文案』〈奎 26569-1〉
- ② 『山淸郡 生林里 鴨谷洞 致死女人 金召史 檢屍 覆檢文案』〈奎 26569-2〉
- ③ 『山淸郡 生林里 鴨谷洞 致死女人 金召史 檢屍 三檢文案』〈奎 26569-3〉
- ④ 『山淸郡 生林里 鴨谷洞 致死女人 金召史 檢屍 四檢文案』〈奎 26569-4〉
- ⑤ 『山淸郡 生林里 鴨谷洞 致死女人 金召史 檢屍 五檢文案』〈奎 26569-5〉
- ⑥ 『山淸郡 獄中 致死女人 李召史 初檢案』〈奎 25063〉
- ⑦ 『山淸郡 獄中 致死女人 李召史 獄事 檢査案』〈奎 25062〉

특히 삼검관 이병의의 보고서(③)와 오검관 이인성의 보고서(⑤)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金召史의 죽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살과 타살을 오가는 사건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金召史의 죽음을 조사하던 도중 중요한 증인이었던 金召史의 시어머니 李召史가 사망하는 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섯차례의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관련자들의 증언 번복 그리고 위증은 사건의 진상을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아니면 진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金召史의 시친 김영팔은 압동이 권씨들의 세상임을 은연 중에 강조한다. 따라서 압동의 주민들을 심문해 봐야 권씨에게 유리한 증언만이 나올 것임을 주장한다. 압동의 권씨들은 가장 중요한 관련자인 남편 권원중 조차도 사사로이 놓아주었던 자들이다. 이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진실을 알아낸다는 말인가.

심지어 권씨들은 서로 密通하여 ‘金召史는 竹田 변 헛간에서 자살하였고 이를 李召史와 김상서가 방안으로 옮겼다.’는 진실 아닌 진실을 공유하도록 族屬들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음모라면 얼마든지 진실을 은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과연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원통한 金召史의 영혼이 수월이의 입을 빌어 진실을 밝혀낸 것이다. 권원중의 夾房에 세들어 살던 사비 수월이가 살해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수월이는 金召史의 남편 권원중이 처를 살해하고 自縊으로 위장하는 모든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심지어 권원중의 시어머니 李召史가 발설을 금하는 부탁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李召史와 함께 金召史의 사체를 방안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던 동네사람 김상서는 자신이 李召史의 사주에 의해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함으로써 곤양군수의 진실에 힘을 실어주었다. 점차 김영팔과 곤양군수의 설명은 진실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런 시어머니 李召史의 죽음 그리고 권씨 일가들에 의해 죽음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곤양군수의 酷刑으로 인해 반전되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는 주장이 대두한 것이다. 李召史의 죽음은 三檢時 벌어졌던 ‘亂杖의 효과’를 반전시켰다. 원래 亂杖은 곤양군수의 진실에 유리한 증언을 만들어 내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李召史의 죽음으로 亂杖 그리고 嚴刑은 도리어 곤양군수의 진실을 일거에 부정하는 흥기로 돌변하였다. 이어지는 수월이의 증언 번복, 여기서도 嚴杖은 과거의 진실을 허위로 그리고 과거의 허위를 새로운 진실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같은 亂杖이라면 수월이 자신이 金召史를 살해하였노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영팔이 딸을 구박하여 자살을 결과하였다는 권씨들의 주장은 새로

운 진실이 권리를 획득해 가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출타 중이었던 권원중이 어찌 金召史를 살해할 수 있는가. 檢屍에서 드러난 自縊의 상흔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吳召史를 매수하려던 김영팔의 시도는 치명적이었다. 곤양군수 혹은 사령배들이 김영팔에 의해 매수되었을 가능성을 은연 중에 암시하기 때문이다. 일거에 진실은 역전되었다. 金召史의 타살에서 자살로.

현재 서울대학교 奎章閣에는 金召史의 죽음을 둘러싼 총 다섯건의 조사 보고서 그리고 시어머니 李召史의 죽음을 둘러싼 두 건의 보고서가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인명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건 발생 해당지역의 군수가 1차 조사를 하고 인근의 군수가 2차 조사를 하였다. 두 번의 조사 내용이 일치하면 사건 조사를 종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세 번, 네 번 혹은 이번 사건처럼 5번 아니면 그 이상의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냈다.

물론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던 것만은 아니었다. 향촌 사회에서 일어났던 은밀한 私和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은 원래 알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니 말이다. 특히 이번 산청군 압동의 金召史 사건과 같은 권씨들의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다시 조사관이 되어 산청군 압동으로 떠나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역사가의 작업은 한편으로 탐정의 그것에 비유되곤 한다.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탐구하는 탐정이나 사료의 편린을 발판으로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역사가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역사가와 사료, 그리고 역사적 맥락 등이 만들어내는 해석학적 관계, 뿐만 아니라 당시 산청군의 미묘한 역학 관계 등은 조사자에게는 매우 두터운 암반과 같았다. 그럼에도 역사가는 설록홈즈처럼 과거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된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조사했던 다섯명의 군수들조차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던 金召史 사건의 진실을 후대의 역사가가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겨진 사료를 통해서 말이다.

과연 산청군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古文書'들은 과거의 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가? 누구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2차 사료보다 1차 사료인 고문서가 더욱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역사적 진실'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가와 사료(1차 혹은 2차 사료) 그리고 역사가의 현실, 사료가 처

한 시대적 맥락 등이 엮어내는 사증주의 결과물은 아닐까? 역사적 진실은 혼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산청군의 경우처럼 과거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역사가가 개입된 오늘날에도 '해석'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메타역사'의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과 사건에 대한 고문서를 보고 난후 삼검관 곤양군수의 진실을 넘어서 오검관 함안군수의 '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물론 金召史 사건을 둘러싼 100년전 산청군 압동의 '맥락'에 무지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말이다.

몇 년전 산청군 압동 그곳에 간 일이 생각났다. 그때 오리모양의 개울(鴨水)을 보고 鴨洞이 왜 압동인지 알게 되었다. 당시 압동을 둘러보며 산천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데 없었던 그곳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날을 기대했었다. 이미 100년전부터 '자신들의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산청군 압동 그곳의 '역사'를. 머리 한 구석에 맴도는 시어머니 李召史의 '毒殺' 보고서를 되뇌이면서 말이다.